

「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9. 2.
-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상정일자 : 2024. 9. 5.

2. 제안이유

- 관내 노후농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, 농작업의 효율 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(안 제6조)
- 보조금 지원 등(안 제7조)
- 보조금 지원 제한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 폐차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‘노후농기계’ ‘폐기 업소’ 등의 핵심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
 - 안 제7조(보조금 지원 등)에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함.
- ※ 지급대상: ①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, ② 평창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

- 안 제8조(보조금 지원 제한)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
— < **보조금 지원 제한기준** > —

1. 지원대상 노후농기계의 용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
2. 지원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년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3. 지원대상 노후농기계의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

5. 종합검토의견

-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
군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
례안은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
것으로 확인됨.